2006. 3. 16

사우디아라비아 식품 수입관리제도

내용문의
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출통상팀
(02-2194-7453, shinilgi@khidi.or.kr)

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□ 사우디아리비아 식품 수입관리 제도

○ 사우디는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가 5%로 관세장벽은 부재하나, 일부 자국 보호 품목은 12%, 20%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

○ 대사우디 식품류 수출 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

- Food Manufacturer's Ingredients Certificate : 수출품목 성분 상세내역, 저장방법, 유통한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, 동물성분이 포함됐을 경우, 어떤 동물인지 확인이가능해야 함. 해당 국 보건부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만 인정됨

- Consumer Protection Certificate : 인증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건강에 무해한 식품이라는 것이 증빙되어야 함

- Price List : 현지 가격을 바탕으로 한 가격리스트

○ 사우디는 현지 에이전트의 역할이 다대하며, 정부에서도 자국 무역업 보호를 위해 에이전트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

- 사우디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다음 그림과 같이 현지 에이전트에 의해 시장에 유통되며, 식품류도 통상 유사한 형태로 유통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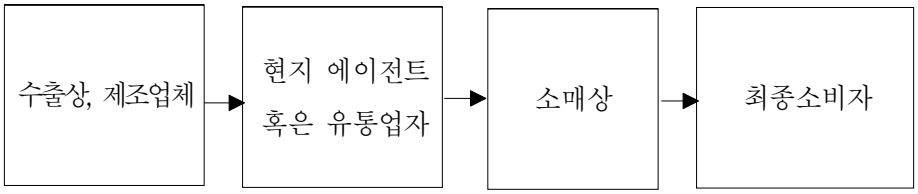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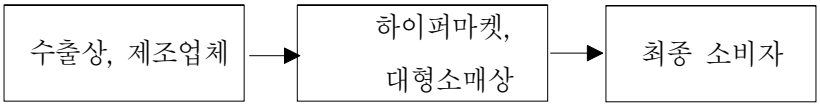
- 단, 식품류의 경우 현지 대형 하이퍼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이 높으며, 이 경우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도 잦음